

「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신용하 의원 외 1인

2. 찬 성 자: 김근한 의원 외 9인

3. 제안이유

- 2024년 6월 경기도 화성 공장 화재의 외국인 근로자 피해를 계기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지원사업 등을 새로 규정하기 위함

4. 주요내용

-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호 신설(안 제5조제2항)
-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신설(안 제7조)
- 위탁 근거 신설(안 제11조)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2, 제4조의3
 -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10조
 - 「근로기준법」 제6조
 -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별도의 지원사업 추진 및 위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외국인근로자는 언어·문화적 장벽 등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측면이 있어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의 맞춤형 지원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한 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판단됨.
- 구체적으로,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, 사용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지원, 사업장 작업 환경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위험성 감소 조치 권고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
- 또한,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위탁 근거 마련을 통해 관련 사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구미시 관내의 외국인근로자 수와 재해자 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외국인근로자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하고 배려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.